

<교외 연구과제 연구비관리 교육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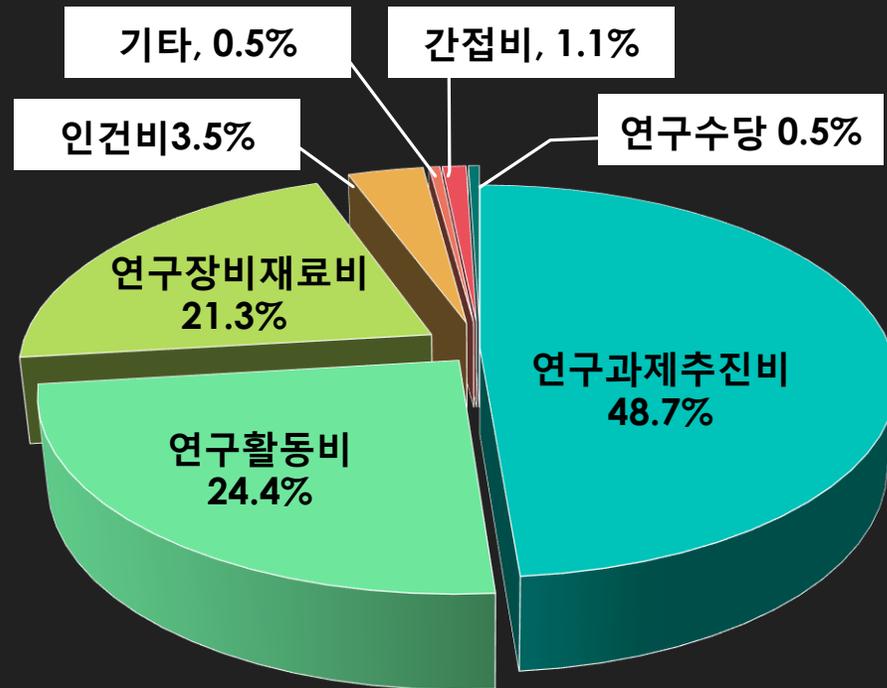
2018 대학 연구비관리 효율화 과정

- ❖ 일시 : 3.15(목) 09:30~12:00
- ❖ 장소 : 보건간호관(구.3과학관) 국제회의장(214호)
- ❖ 발표자 : 한국연구재단 정산총괄팀장

연구비 비목별 부적정 집행 현황

(건수) 최근 3년간 ("13년~'15년까지) 연구비 부적정 집행현황 550건의 분석결과,
 연구과제추진비 → 연구활동비 → 연구장비 및 재료비의 부적정 집행건수가 많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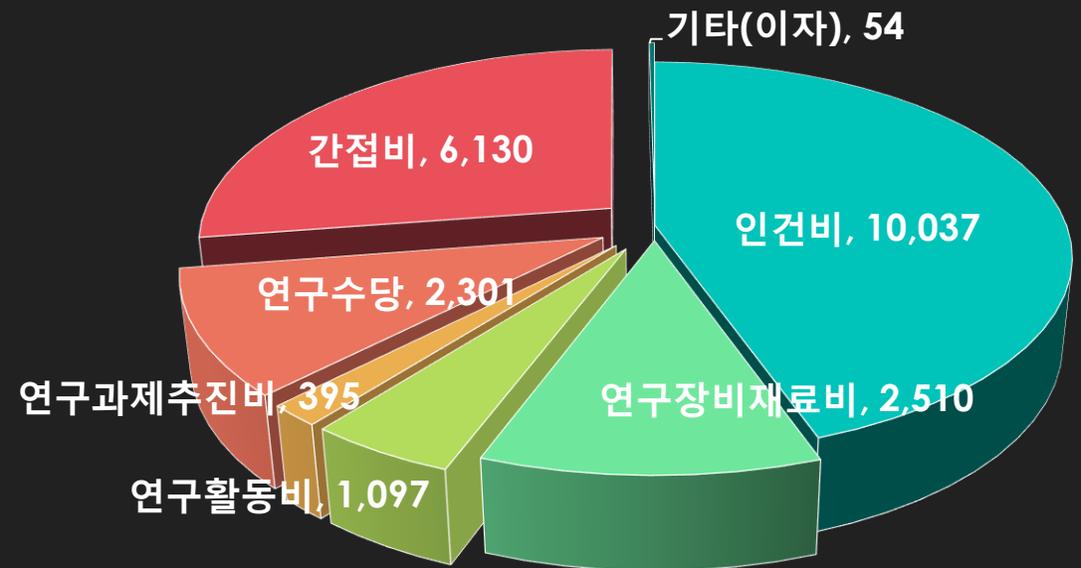
구분	건수	비율
인건비	19	3.5%
연구장비및재료비	117	21.3%
연구활동비	134	24.4%
연구과제추진비	268	48.7%
연구수당	3	0.5%
간접비	6	1.1%
기타(이자)	3	0.5%
합계	550	100.0%



연구비 비목별 부적정 집행 현황

(평균금액) 최근 3년간 ('13년~'15년까지) 연구비 부적정 집행현황 550건의 분석결과,
건당 회수금액은 인건비 → 간접비 → 연구장비 및 재료비 순으로 많음

구분	평균금액(1건당)
인건비	10,037천원
연구장비및재료비	2,510천원
연구활동비	1,097천원
연구과제추진비	395천원
연구수당	2,301천원
간접비	6,130천원
기타(이자)	54천원
합계	22,517천원



인건비 관련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지적사례

사례 1

기업이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계획서에 과다계상하여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, 참여연구원이 이미 퇴사하였으나, 해당 연구원의 인건비를 지출한 것으로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를 한 경우

➤ 인건비 지급 관련 서류 확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조회

연구장비 재료비 관련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지적사례

사례 1

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에는 토너, A4 등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실제로는 컴퓨터, 프린터 등 범용성 장비를 납품받아 사용하다가 드러난 경우

- 토너 등과 같은 소모성 재료를 과다 구입한 결과, 납품업체의 거래원장을 입수하여 비교

사례 2

영리기관이 연구계획서에 미계상된 컴퓨터 구입을 위해 컴퓨터 관련 부품(메모리, CPU, 그래픽카드 등)을 구입하고, 구입한 부품을 조립하여 컴퓨터로 사용하다가 드러난 경우

- 일시 또는 여러 번에 나누어 컴퓨터 부품을 사실을 의심하여 LAB을 방문하여 현지 조사 실시

연구활동비 관련 지적사례 (국외여비)

사례 1

연구 책임자 A 교수가 해외 출장지인 B 국가에 출장 후 별도의 행정 행위 없이 단순한 자료 수집 목적으로 C 국가를 방문하면서 해외 출장비를 수령

➤ 과제와 무관한 해외출장경비 지급 불가

연구과제추진비 관련 지적사례 (여비)

사례 1

연구 책임자 A 교수가 이공분야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과제와 관련 없는 평가회의, 박사논문 심사회의 등에 참석하면서 연구과제에서 여비를 집행

➤ **여비의 집행 목적이 연구과제와 무관**

연구과제추진비 관련 지적사례 (회의비)

사례 1

연구책임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가맹점은 일반 음식점이나 실제 장소는 와인바, 호프집, 유흥주점, 노래방 등에서 연구비를 집행

- 음식점 상호와 로드뷰를 통해 실질 확인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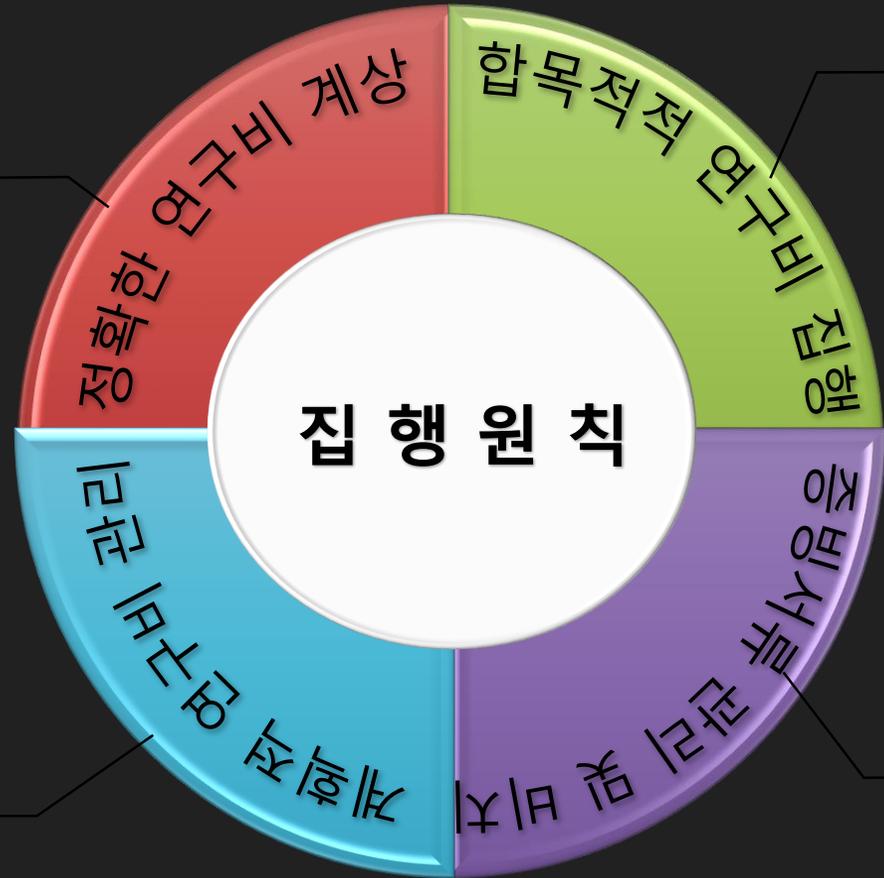
사례 2

타기관 소속 연구자(주로 선후배관계)를 회의 참석 한 것으로 회의록에 허위 기재하여 회의비 집행

- 원소속기관 복무사항 실질 확인

연구비 집행 주요원칙

- 연구비가 부당 또는 과다계상 되지 않도록 산정기준을 근거로 계상
- 협약기간 만료 후 부당 또는 과다 책정금액 환수 조치



- 연구비는 계획 및 목적에 맞게 집행
- 연구비는 연구과제 목적 외 다른 용도 사용불가

- 연구종료 즈음하여 기자재나 다량의 시약재료 구매 지양

- 연구비 집행의 증빙은 객관적인 증빙 서류로 하며, 연구종료일로부터 최소 **5년간** 보존